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3. 21. 강준현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5. 3.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7회 국회(임시회)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7. 18.)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1.)

상정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11차 전체회의(2025. 11. 2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준현의원)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자계약증권과 유통가능성이 적은 일부 수익증권 등에 대하여 발행과 관련하여서만 증권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및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기존에 거래되기 어려웠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유통되고 있으며, 정부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에 나서고 있음. 또한,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을 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
- 2)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시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66조제2항 신설).

- 3)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경우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규정은 해당 인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
- 4)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종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5항 신설).

3. 대체토론 요지

없음

4.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의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5. 찬반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부대의견

없음